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7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써,
- 나.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(시각, 청각, 언어, 뇌병변, 지적, 자폐성)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컨설팅 서비스, 인식개선 교육 등 권리증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장애인의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(사)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 협회에 재계약으로 운영하였으며,
- 다.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·운영
- 위탁기간 : 2026.09.01 ~ 2029.08.31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419,840천원('26년 예산 기준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적격자심의위원회(수탁기관 공개모집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8조
- 추진 필요성
 - 본 위탁사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, 그중 성인 대상 의사소통 지원 및 보완대체의사소통(AAC) 서비스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
 - 전문적 지식과 기술,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,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등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임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-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
-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위탁시설 개요

구 분	위 치	규모	인력	위탁기간	운영주체
서울시장장애인의사 소통권리증진센터	영등포구 선유로9길 10, 문래SKVI센터 1620호	798㎡	5명	'23.9.1~ '26.8.31	(사)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조건이행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박은화 (☎ 2133-7363)